

복지영향평가 지표개발 및 예비조사

- 간이평가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

제 출 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복지영향평가 지표개발 및 예비조사
- 간이평가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이 정 관

＝ 연구진 ＝

연구책임 : 서종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 부전문위원)

＝ 자문위원 ＝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유광봉 (서울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팀장)

이복현 (서울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주무관)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 1. 연구 배경 2
- 2. 연구 목적 4
-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정책평가 유형 및 현황

- 1. 정책평가 개념 및 유형 6
- 2. 국내 평가제도 현황 7
- 3. 시사점 31

제3장 서울시 복지정책 간이평가 체계

- 1. 개념 33
- 2. 목적 및 전제조건 34
- 3. 적용 대상 및 추진방법 34
- 4. 평가 지표 36
- 5. 평가시기별 체크리스트 양식 41

제4장 평가결과 활용 및 향후 추진방향

- 1. 평가결과 활용방안 46
- 2. 향후 추진방향 47

참고 문헌

표 목 차

〈표 2-1〉 정책평가 유형	6
〈표 2-2〉 영향평가제도의 구성요소 및 쟁점사항	9
〈표 2-3〉 국내 영향평가제도	11
〈표 2-4〉 규제심사 착안사항 및 체크리스트	16
〈표 2-5〉 성별영향평가 지표	19
〈표 3-1〉 기획·계획단계 검토사항	36
〈표 3-2〉 기획·계획단계 지표	37
〈표 3-3〉 집행단계 검토사항	38
〈표 3-4〉 집행단계 지표	38
〈표 3-5〉 결과단계 검토사항	39
〈표 3-6〉 결과단계 지표	40
〈표 3-7〉 평가 상황에서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의 차이	41
〈표 3-8〉 서울시 복지정책 간이평가 사전 체크리스트 양식	41
〈표 3-9〉 서울시 복지정책 간이평가 사후 체크리스트 양식	43

그림 목차

[그림 2-1] 교통개선대책 개선안 마련 절차도	15
[그림 2-2]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활용	17
[그림 2-3]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18
[그림 2-4] 성별영향평가 평가 흐름도	19
[그림 2-5] 부패영향평가 절차도(개선안)	21
[그림 2-6]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및 평가절차	22
[그림 2-7] 고용영향평가 흐름도	24
[그림 2-8] 건강영향평가 협의 절차	26
[그림 2-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수행된 기술영향평가 중심축	28
[그림 2-10]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기	29
[그림 2-11] 개인정보영향평가 절차	30
[그림 3-1] 사전 및 사후 간이평가 절차도	35
[그림 4-1] 서울시 복지정책 간이평가를 위한 부서별 역할 체계도	47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 최근 복지국가 논의가 많아지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복지급여 수준과 재원조달에 관한 쟁점 부각
 - 사회복지를 누구에게 ‘할당’할 것이냐에 따라 상당한 시각 차이를 보이면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및 ‘보편적 복지’ 등의 정책이 화두임.
 - 이에 따라 복지정책의 복지급여 수준과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논쟁이 활발함.
- 복지정책은 고용, 교육, 주거 및 산업(사회적 기업, 실버산업 등)과 연계되어 광범위한 정책 도입
 - 최근 복지정책은 사회적 효과성을 고려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서비스나 광범위한 예방프로그램을 실행함.
 - 복지사업 현황은 보건복지부 등 13개 중앙부처에서 292개 복지정책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국무총리실 보도자료, 2011).
 - 보건복지부(156개), 여성가족부(36개), 국가보훈처(28개), 고용노동부(23개), 교육과학기술부(10개), 국토해양부(10개), 지식경제부(10개), 농림수산식품부(7개), 문화체육관광부(6개), 행정안전부(2개), 산림청(2개), 방송통신위원회(1개), 소방방재청(1개) 등 13개 행정부처에서 복지정책을 시행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수요자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
 - 기초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경제활동인구(18세~59세, 32,577천명, 2010년 12월 기준) 중 57.5%(18,722천명)¹⁾로 추정됨(강성호, 2011).
 - 국민연금 가입자(19,299천명)의 35%(6,766천명)²⁾가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임.

1) 적용 사각지대는 비경제활동인구(10,599천명), 공적연금비적용자(1,357천명), 납부예외자(5,100천명), 미납자(1,666천명)가 포함됨. 자세한 내용은 강성호(2011) 자료를 참고함.

- 실직시 기초소득보장을 제공하는 고용보험제도는 취업자(2,274만 명) 중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는 58,8%(1,336만 명)임(국회예산정책처, 2009).
 -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는 자영업자(556만명), 무급가족종사자(123만명), 임시·일용직(657만명)이 포함됨.
 - 기초의료보장제도인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은(2009년 9월 기준) 지역가입자(7,896천 세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 중 3개월 이상 보험료 3만원 이하 체납자는 12.3%를 차지함(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09).
 - 지역가입자의 자격유지자 중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 중에서 보험료 1만원 이하는 140천세대, 1~3만원 이하는 833천세대임.
 - 전체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체납자는 24.9%(1,963천 세대)임.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200만 가구)는 전체 수급권자(101만 가구)의 2배 이상임(국회예산정책처, 2009).
 - 수급권자로서 기초생활보장가구는 97만 가구(165만명)와 긴급 복지 대상자인 4만 가구(10만명)임.
 - 사각지대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60만 가구(100만명), 자산기준 초과 110만 가구(240만명), 차상위 30만 가구(70만명) 등 200만 가구(410만명)임.
-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별 과정(정책형성, 홍보, 집행, 평가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시급
- 기존의 사후적이고 환류에 근거한 평가체계보다는 사전적이고 과정적이며, 정책 담당자들이 정책과정에서 이용가능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2) 납부예외자(5,100천명), 미납자(1,666천명)임.

2. 연구 목적

- 서울시 복지시책의 정책 과정에서 야기되는 실패요인을 사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제안
 - 복지시책의 정책 전 과정을 평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 변화를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사업의 조정을 촉진함.
- 지역사회 전체 측면에서 또는 전체 클라이언트 집단측면에서 욕구 충족 정도와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는 평가결과 활용방안 제안

3.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 기존 문헌을 통해 정책평가 유형을 파악하고 국내 평가제도의 현황을 살펴봄.
- 복지정책 평가 개념을 설정하여 평가지표와 내용을 제시함.
- 복지정책 평가의 결과 활용방안과 향후 추진방향을 제안함.

■ 연구 방법

- 선행 자료 분석
 - 평가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 등 제도수립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함.
- 자문회의
 - 학계 전문가(행정, 복지 분야)를 대상으로 2회 자문회의를 실시함.
 - 주요 내용은 평가의 개념과 구체적인 지표에 대해 의견수렴을 실시함.
- 실무회의
 -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실시함.
 - 향후 평가 체계의 집행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함.

제2장 정책평가 유형 및 현황

1. 정책평가 개념 및 유형
2. 국내 평가제도 현황
3. 시사점



제2장 정책평가 유형 및 현황

1. 정책평가 개념 및 유형³⁾

■ 정책평가 개념

- 정책의 내용, 집행 및 집행의 결과와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사정 또는 평정하기 위하여 체계적 연구방법들을 응용하는 것으로서
- 어떤 한 정책의 과정이나 결과를 이해하고 그 값을 판단하는 사회적인 과정임.

■ 정책평가 유형

- 정책평가 방법들은 주로 사업의 검증과 정책목표에 대한 상황적 타당성을 위한 평가들로서 다양한 방법이 있음.
 - 착수직전분석, 평가성 사정, 형성적 평가, 모니터링, 정책영향평가, 메타평가 등이 있음.

<표 2-1> 정책평가 유형

유형	내용
착수직전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결정하기 바로 직전에 수행되는 평가 작업 - 사업의 수요, 개념의 적합성, 운영적 측면의 실행가능성, 재정적 지원의 소스, 기타 필요한 여타의 지원 등을 재확인하거나 추정
평가성 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결과지향적인 관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가, 그리고 평가가 프로그램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비평가 일종 - 사업의 목적, 기대 및 인과적 가정, 정치적 관점에서 사업 목적, 사업 목적과 정보가 측정가능한 용어로 정의된 정도, 현재 시행 중인 사업, 사업 목적의 측정가능성, 사업 성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사업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홍보 등을 탐구

3) 노화준(2003), 「정책평가론」, pp.26-76 요약 정리함.

유형	내용
형성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되는 평가 - 사업 특성, 사업 대상이 된 모집단, 사업 집행 맥락, 사업 산출 효과 등의 과정 평가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투입 또는 활동을 측정하고 초기 목표에 부응하는지를 측정 - 대상 모집단 또는 지역에 사전 결정된 사항이 도달되었는지, 사업 활동의 설계가 그대로 수행되는지를 평가
정책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정책평가라고 하면 정책영향평가를 의미 - 사업이 전체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방법 - 사업 대상의 변화 여부, 변화의 원인이 집행 사업 때문인지에 대한 여부, 변화에 투입된 비용의 정당성, 변화로 인해 제기된 문제해결 적합성 검토 등을 평가
메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그 자체와 피드백 기능 평가로써 이미 이루어진 평가를 최종 보고자(정책결정자)에게 보고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하기 전에 이뤄지는 평가 - 평가에 사용된 방법의 적정성, 사용된 자료의 오류 여부, 도출된 결과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 등을 검토

■ 본 연구에서는 정책평가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책영향평가의 국내 사례를 통해 서울시 복지정책 평가 체계 방향성 검토

2. 국내 평가제도 현황

1) 개요⁴⁾

■ 영향평가제도(Impact Assessment) 개념 및 목적

- 영향평가는 계획된 정책 수단의 부작용, 비용, 결과 등을 평가함에 있어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접근방법임(OECD,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 재인용).

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 p.2, 한국법제연구원(2008) 요약 정리함.

- 영향평가제도의 목적(European Centre for Health Policy, 1999: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 재인용)은 다음과 같음.
 -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여 활용함.
 - 정책의 영향을 받는 국민과 정책결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함.
 -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입안된 정책의 조정을 촉진함.

■ 영향평가제도 기대효과

- 영향평가는 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로서 영향평가를 통해 정책수단과 정책결정의 질을 제고함(OECD,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 재인용).
 - 정책개발단계는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며, 영향평가는 그 목적 성취를 위한 가장 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유용함.
 - 수단발전단계는 선택된 수단이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고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확신하기 위한 수단의 최종 선정에 유용함.
 - 평가단계는 정책 집행 후 실제 영향 확인에 유용함.

■ 영향평가제도 유형

- 영향평가제도는 평가체계 및 운용체계의 설계에 관련이 있는 요소인 평가시기와 평가체계의 포괄성·치밀성 등의 기준에 유형화 될 수 있음.
- 평가 시기는 2가지로 구분됨.
 - 사전평가는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기까지 이르는 평가로서 정책의 필요성 및 정책 대안의 개발,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주목적임.
 - 사후평가는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 혹은 실행 후에 수행되는 평가로서 정책의 목표달성정도, 부작용, 개선필요성 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주목적임.
- 평가체계의 포괄성·엄격성 정도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음.
 - 간이평가는 시간과 자원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평가 대상 정책(사업)의 담당자가, 잠재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문헌과 정보를 중심으로 검토함.

- 심층평가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다양한 방법론 적용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독립적인 평가기관에 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진행된다.

■ 영향평가제도 구성요소

- 영향평가제도의 평가체계 및 운용체계와 관련된 구성요소 및 주요 쟁점사항은 <표 2-2>과 같음.

<표 2-2> 영향평가제도의 구성요소 및 쟁점사항

구 분	내 용	주요 쟁점
평가 체계	평가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책개선의 지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 - 목표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조작적 정의 포함 - 해당 목표 달성에 대한 사회적 당위성 혹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동의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평가기관의 도입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수용성 - 평가 정책(사업)의 고유 목적과 영향 평가의 목적의 조화성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행정규칙, 자치법규까지 원칙적으로 모든 대상을 선정 - 혹은 평가대상 선정 원칙을 마련하여 주요 정책(사업)만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대상 범위 설정 기준의 타당성 - 피평가 정책(사업)과 잠재적 영향과의 관련성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준 및 항목의 포괄성·엄격성 정도에 따라 간이평가와 심층평가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요인과 그 결과와의 인과적 타당성 - 평가대상 정책 특성의 다양성을 반영한 고려한 평가기준의 포괄성 - 평가가 용이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평가지표 현실적합성 및 단순성
	평가결과 실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의 구속력 정도에 따라 권고적 성격과 규제적 성격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정책(사업)의 개선정도 - 시정사항 조치를 위한 재원마련 - 정책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 및 가시성

구 분		내 용	주요 쟁점
운영 체계	평가절차	- 평가주관 기관과 피평가 기관외에 전문가와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정도에 따른 구분	-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방법론 확립 및 관련 DB 구축 정도 - 평가 과정 및 결과 관련된 정보공개의 투명성
	평가시기	- 사전평가·사후평가 중 택일 또는 병행	
	평가수행 주체	- 자체평가 또는 독립된 평가기관 지정으로 구분	- 피평가기관 담당자의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전문성 정도

2) 국내 영향평가제도 사례

■ 국내 영향평가제도

- 각종 개별법에 따라 여러 부처(9개 부처 10개 제도)에서 분산 수행되고 있음(표 2-3).
 - 환경부(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국토해양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국무총리실(규제영향분석), 여성가족부(성별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평가), 교육과학기술부(교육환경영향평가), 고용노동부(고용영향평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기술영향평가), 행정안전부(개인정보영향평가) 등임.
 - 이 외 입법영향분석(입법조사처),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보건복지부), 인권영향평가(행정안전부·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려고 했던 제도임.
- 국내 영향평가제도는 환경적 개선(물리적 환경, 교통, 교육환경, 기술 등)과 정책 또는 제도 개선(규제, 성별, 부패, 고용, 건강, 개인정보 등)으로 구분됨.

<표 2-3> 국내 영향평가제도

구분	도입시기	법적 근거	개 념
환경영향평가	'81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데 있어 경제적·기술적 측면 이외에 환경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87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장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이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분석하고 그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
규제영향분석	'98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 규제로 인해 나타날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규제수단과 대안을 탐색하여 기존규제의 합리적 개선 유도
성별영향평가	'05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정책이 개발·집행되도록 하는 제도
부패영향평가	'0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시행령 30조)	-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제도
교육환경영향평가	'08	학교보건법 제6조의2	-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확보·보건하기 위해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주변 유해요인을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쾌적한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제도
고용영향평가	'10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 국가 지자체의 주요 사업 정책 및 법 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고용친화적 정책추진

구분	도입시기	법적 근거	개 념
건강영향평가	'10	환경보건법 제13조	-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로는 고려되지 못했던 환경유해인자의 건강영향과 어린이, 노인 등 건강약자(민감 계층)들에 대한 건강영향을 분석 예측하여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기술영향평가	'10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로서 새로운 기술의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산업 발전에 미칠 영향,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칠 영향,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
개인정보영향평가	'11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이나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기존 정보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시 동 시스템의 구축·운영·변경 등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절차
입법영향분석	추진중 (국회)	-	- 법률안이나 현행 법률이 국가와 사회, 개인에게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측·분석·평가함으로써 입법자의 의사결정 지원 및 입법품질향상, 입법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	미도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저출산영향평가) 법령 및 정책 등이 국민들의 결혼,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 - (고령화영향평가) 고령화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령사회 대응을 저해하는 연령차별 및 노인 하위 집단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분석도구
인권영향평가	미도입	국가인권위원회법	- 정부의 법령과 정책 및 사업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

(1) 환경영향평가⁵⁾**■ 기본 원칙**

-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환경보전방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 함.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대상 사업(동법 별표1 참고)

-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의 개발,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 공항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개간 및 공유 수면의 매립, 관광단지의 개발, 산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 처리시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토석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 등임.

■ 평가항목별 주요 평가내용(동법 별표2 참고)

- 공통(모든 대상 사업)
 - 주요 오염원 및 소음·진동 등 환경현황 또는 예측·분석된 환경의 질 등을 적절히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 주변 토지이용현황 및 교통망 등의 계획을 고려한 시설설치 또는 배치계획에 대한 평가
 - 교육시설, 문화재 또는 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유적,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현황 및 대책
 - 절·성토에 따른 법면발생구역 위치 및 주변경관을 고려한 법면처리대책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 등의 분포현황 및 보호대책

5)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홈페이지 자료 요약정리(<http://www.eiass.go.kr/>, 검색일: 2011. 12. 01)

- 철새도래지 분포현황 및 보호대책
- 그 외 사업별 평가항목별 주요 평가내용
 - 기상, 대기질, 악취,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 자산,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보건, 전파장애, 일조장애, 인구, 주거, 산업 등임.
- 환경영향평가의 제출 및 협의 절차
 - 협의 요청시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의거 대상사업의 계획에 대한 승인, 인가, 허가, 면허 또는 결정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협의 절차
 - 사업자가 작성한 평가서는 사업승인기관에 제출되고
 - 다시 사업승인기관에 의하여 환경부(또는 지방환경관서)에 협의 요청됨.
 - 환경부는 평가서를 협의함에 있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의견을 들어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한 결과(협의내용)를 사업승인기관에 통보함.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⁶⁾

- 제도 연혁
 - '86.1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정
 - 교통영향평가제도 도입·시행함.
 - '00.0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정
 - 4대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인구) 제도 통합·시행함.

6)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요약정리(http://www.mltm.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351, 검색일: 2011. 12. 01)

● '09.0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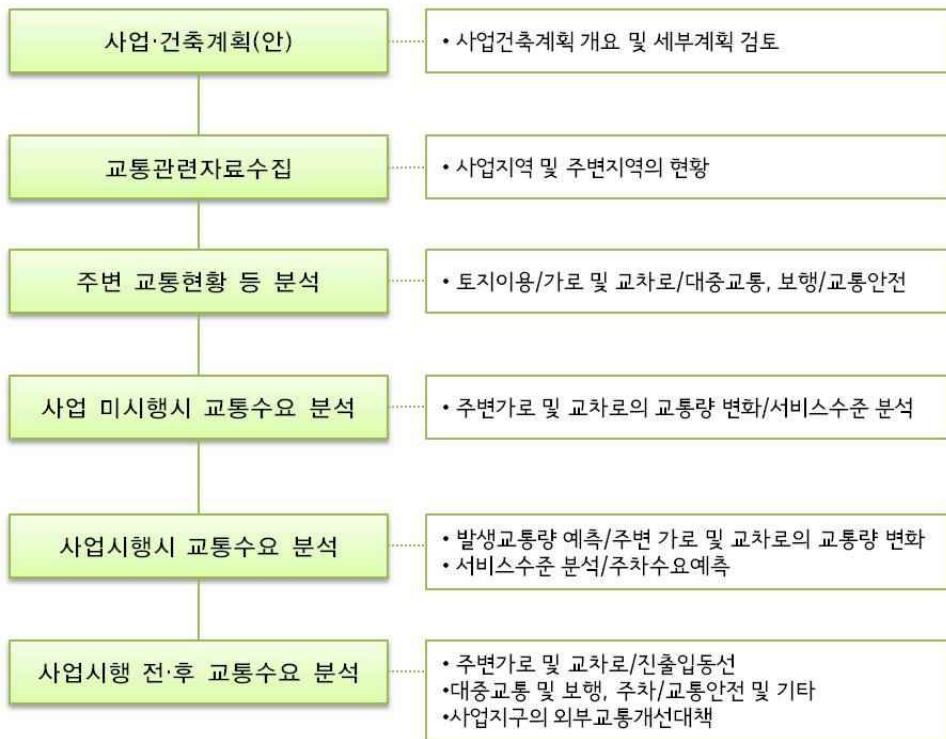
-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대체·시행함.

■ 대상 사업(건축물) 및 규모(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참고)

● 사업 :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35개 사업

● 건축물 : 아파트, 판매시설(백화점), 의료시설(병원) 등 32개 건축물

■ 교통개선대책 개선안 마련 절차도



[그림 2-1] 교통개선대책 개선안 마련 절차도

(3) 규제영향분석⁷⁾

■ 목적

- 합리적 정책결정을 통한 규제의 품질을 제고함.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하고 방지함.
- 규제 담당자의 행정 책임성을 제고함.

■ 평가항목 및 요소

- 규제의 필요성
 - 문제 정의(배경과 원인), 규제 신설·강화의 필요성
-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 대안의 검토,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 규제의 적정성, 이해관계자 협의,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규제심사 착안사항 및 체크리스트

<표 2-4> 규제심사 착안사항 및 체크리스트

착안사항	점검내용
문제가 정확히 정의되었는가?	-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정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그 본질과 규모, 발생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
규제의 신설·강화 등 정부의 조치가 정당화되는가?	-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 기존 규제의 충실한 집행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규제를 만들거나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교육 및 홍보, 정부지원 등의 대안을 검토하였는지?

7) 국무총리실(2008) 자료 요약정리.

착안사항	점검내용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규제를 통해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 하더라도, 합리적인 규제를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비교하였음을 설명해야 함. · 규제의 강도, 규제방식이 적절한 대안을 검토 했는지? · 대안이 공정경쟁과 자유무역을 촉진하는지? · 중소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기업규모의 차이에 따른 규제시기·방법 등의 차별화 필요성이 있는지?
규제의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 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계량적 방법 등을 활용하여 충실히 실시했는지?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비용·편익 분석의 전문성·객관성이 확보되었는지?
규제의 적정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지?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한 피규제자에게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절차·구비 서류 등을 간소화 할 여지는 없는지?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규제자, 이해관계인,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 제시된 의견에 대한 충실히 검토했는지?
집행의 현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집행을 위한 인력·예산 등이 확보되어, 규제가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는가? - 피규제자가 규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기술적·현실적으로 가능한가?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활용



[그림 2-2]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활용

(4) 성별영향평가⁸⁾

■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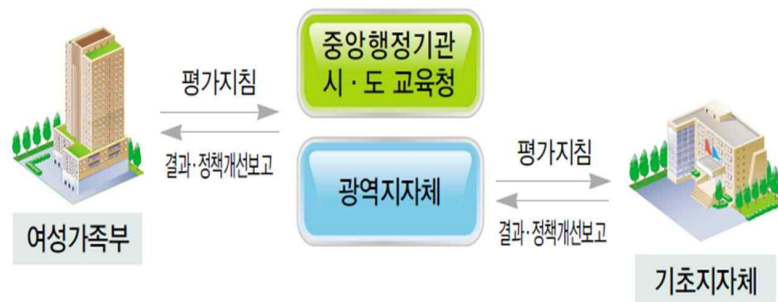
- 정책의 성 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여 정책의 활용도 및 효과성을 제고함.
- 여성과 남성의 공동 참여와 균등한 발전 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을 마련함.

■ 평가유형

- 자체 평가
 - 각 기관의 공무원이 직접 소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평가를 추진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태임.
- 특정 평가
 - 핵심정책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정책을 전문가가 심층·분석하는 형태임.

■ 적용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임.



[그림 2-3]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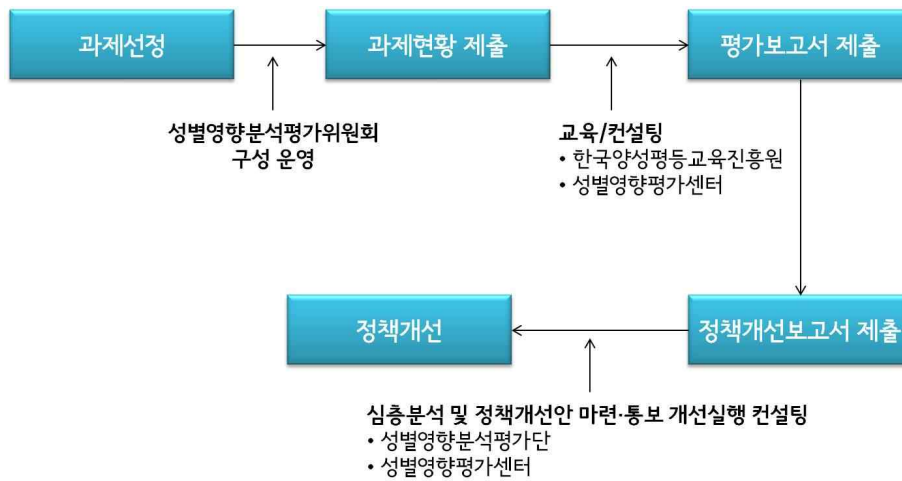
8) 여성가족부(2010) 자료 요약정리.

지표

<표 2-5> 성별영향평가 지표

구분	내용
지표1. 성별현황분석	1-1 성별통계 현황 · 정책(사업) 대상 모집단의 성별 현황 · 정책(사업)참여자의 성별현황 · 위원회의 성별현황 · 예산집행액의 성별비율 · 만족도의 성별현황(있는 경우) 1-2. 성별격차 발생 원인
지표2. 정책개선	2-1. 정책개선 방안 · 관련 법령·지침·규정 등 개선 · 사업수행방식 개선 · 예산편성 개선안 · 성별통계 생산 및 활용방안 2-2. 정책개선 계획

평가 흐름도



[그림 2-4] 성별영향평가 평가 흐름도

(5) 부패영향평가⁹⁾**■ 추진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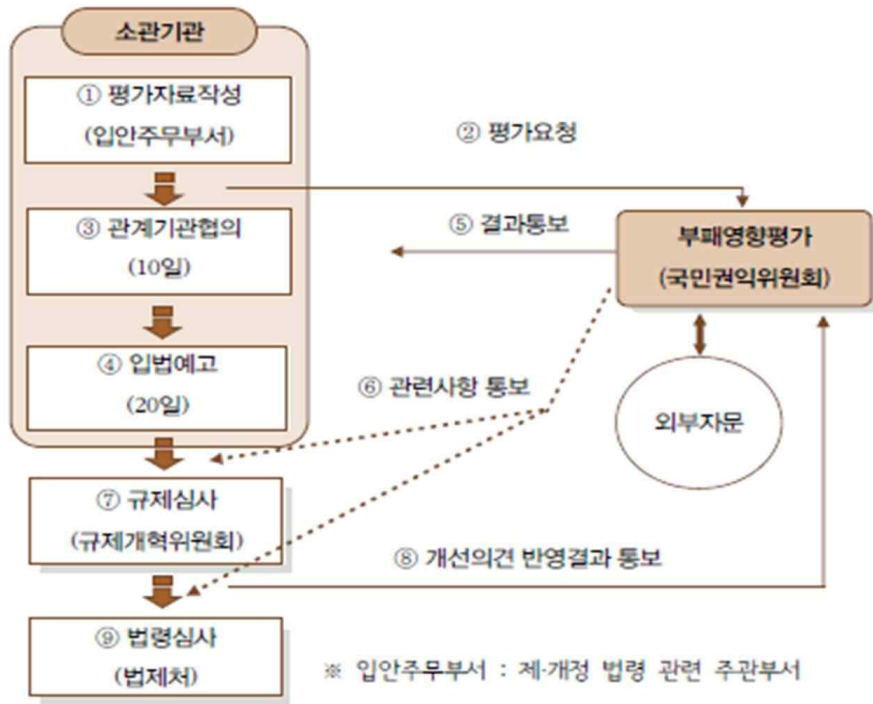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2조
 -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평가지침,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개선권고, 평가결과의 통보 등
 - 공직유관단체장의 부패영향평가 요청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제6항
 - 법령인 주관기관의 장은 관계기관 협의시 부패영향평가를 함께 요청

■ 평가기준(2012년 1월 1일 개정안 시행 예정임)

- 준수율의 용이성
 -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를 검토함.
- 집행기준의 적정성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를 검토함.
- 행정절차의 투명성
 -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가능성, 이해충돌가능성
 -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9)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2011) 자료 요약정리.

■ 부패영향평가 절차(제·개정 법령안 기준)



[그림 2-5] 부패영향평가 절차도(개선안)

(6) 교육환경영향평가¹⁰⁾

■ 기능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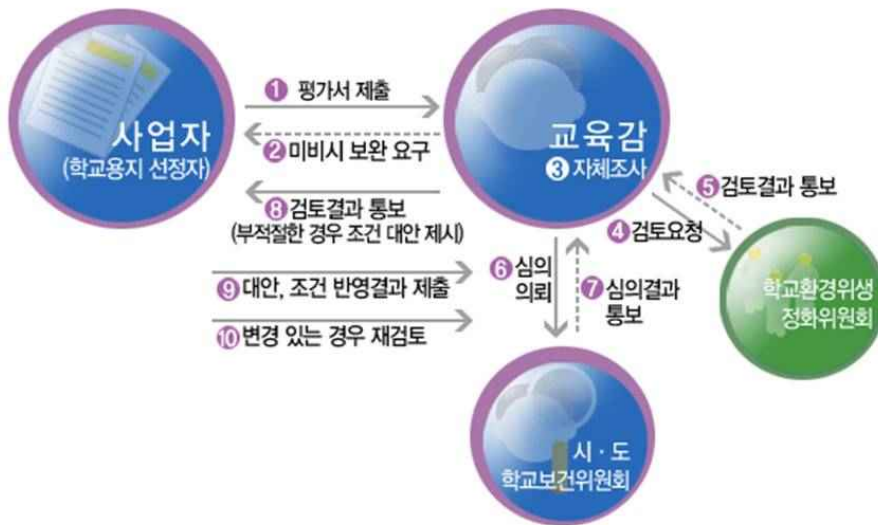
- 학교설립 이후 학생들에게 제공될 물리적·정서적인 환경 중 부정적이거나 유해 가능성이 있는 환경은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함.
- 학교 설립권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함.
- 예측 가능한 택지개발(도시개발) 및 학교용지의 확정을 위한 수요자와 공급자간 객관적인 도구로 활용함.

10) 서울특별시교육청(2011) 자료 요약정리.

■ 평가 항목

- 위치 : 일반사항, 학생통학범위, 학생수용 계획, 도로 접근성 등
- 크기 및 면적 : 적정 면적, 길이와 폭의 비
- 지형 및 토양 환경 : 경사도 등, 풍수해 등 우려, 토지의 과거 이용력, 토양환경 등
- 대기환경 : 대기·소음·진동, 일조량
- 주변 환경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인근 300미터 이내의 위험요소 등 조사
- 공공시설 등

■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절차



[그림 2-6]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및 평가절차

(7) 고용영향평가¹¹⁾**■ 대상정책의 범위 및 선정기준**

● 대상정책의 범위

-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정책임.

● 대상정책의 선정기준

- 부처·자치단체 등임.

■ 주요 항목

● 정책의 고용연계성

- 정책목표의 고용과 연계가능성
- 정책집행과 고용 연계성

● 고용효과 분석·평가

- 정책 시행으로 창출될 수 있는 최대 일자리
- 정책의 시행에 따라 창출된 일자리
- 정책의 개선을 통해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
- 정책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거나 발생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일자리 증감

■ 평가유형

● 자체평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소관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함.

11)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요약정리(<http://www.keis.or.kr/jsp/rd/anal/monitoring.jsp>, 검색일: 2011.12.01)
고용노동부(2011) 자료 요약정리.

● 요청평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소관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함.

● 선정평가

-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심의한 정책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평가를 실시함.

■ 영향평가 흐름도



[그림 2-7] 고용영향평가 흐름도

(8) 건강영향평가¹²⁾**■ 목적**

- 대상사업의 시행이 야기하는 건강결정요인의 변화로 인해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확인하고
- 인체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과 건강불평등을 최소화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사결정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 국내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일부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계획, 프로그램은 미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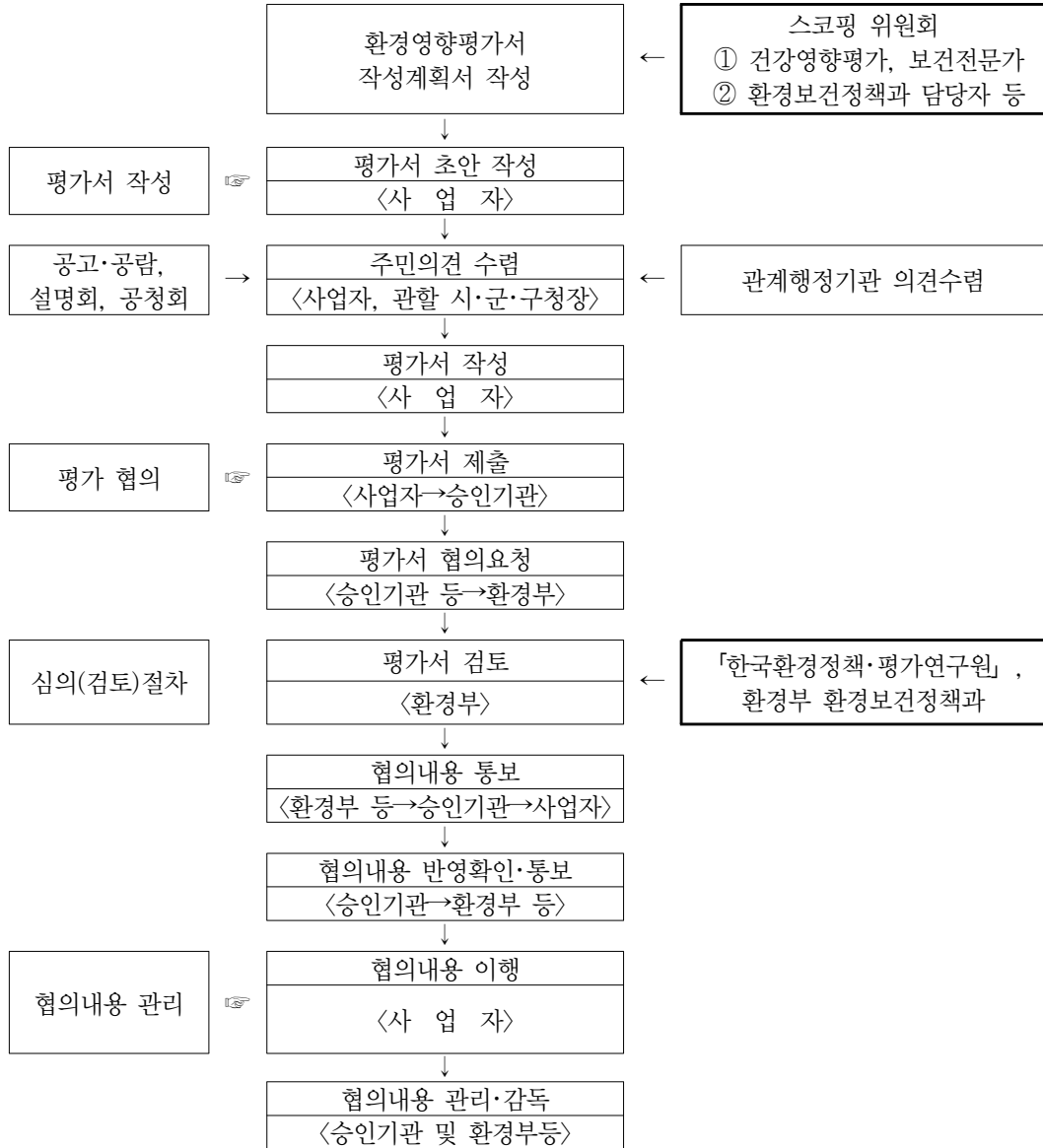
■ 대상사업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 에너지 개발
-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 건강영향평가 협의 절차

- 건강영향평가제도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운용되므로 기존의 평가 협의 절차를 큰 변화 없이 준용함.
- 평가서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스코핑 위원회)에 건강영향평가 또는 보건전문가와 환경보건정책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건강영향평가 내용 검토는 협의권자에 따라 달리 적용됨.
 - 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함.
 - 환경부장관이 협의권자인 경우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가 수행함.
 - 지방청장이 협의권자인 경우는 유역청(또는 지방청) 환경평가과에서는 KEI와 (지역)환경보건전문가 풀(pool)을 이용하여 내용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음.

12)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2009) 자료 요약정리.



[그림 2-8] 건강영향평가 협의 절차

(9) 기술영향평가¹³⁾**■ 개요**

- 과학기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인식되면서 과학기술은 일부 전문가들에 의한 전유물이 아닌 사회 전체에 의해 책임성 있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으로 인식이 확산됨.
- 선진 각국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초래하는 다양한 영향을 파악하여 부정적인 측면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970년대부터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기술영향평가를 추진함.

■ 평가 대상 선정시 고려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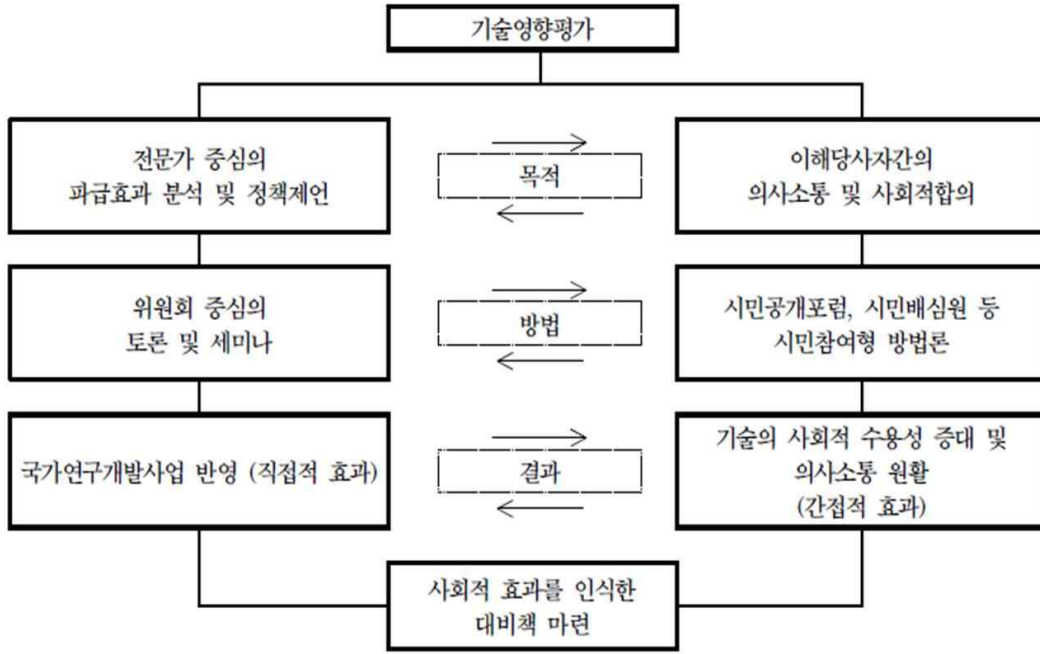
- 대상 기술선정
- 일반적인 원칙 이외 고려 요소
 - 현재 등장하고 있는 신기술
 - 여러 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기술
 - 개념과 범주가 비교적 명확한 기술
 - 대상 범위가 너무 크지 않은 기술

■ 주요 평가내용

- 대상 기술이 가져올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 대상 기술이 가져올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 대상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1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step.re.kr/major/duty/plan_02_04.jsp, 검색일: 2011. 12.01).

■ 운영 절차



[그림 2-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수행된 기술영향평가 중심축

(자료: 유지연·한민규·임현·안병민·황기하(2010), p.632)

(10) 개인정보영향평가(PIA: Privacy Impact Assessment)¹⁴⁾

■ 평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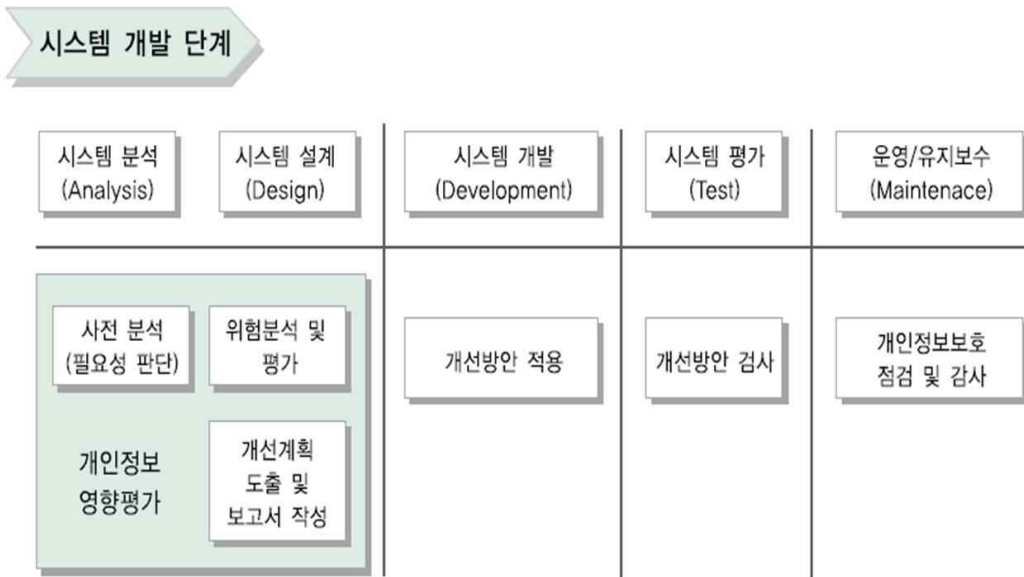
-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신규 구축 사업
-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존 정보시스템을 변경하는 사업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보관·파기하는 등의 일련의 업무 절차상에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기관과 연계하는 경우

14) 행정안전부(2011) 자료 요약정리.

-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의 통합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우려되는 기술을 사용하는 사업

■ 평가 시기

-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는 것이므로,
- 일반적으로 시스템 구축 전단계인 시스템 분석이나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합함.



[그림 2-10]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기

■ 평가 수행 주체

-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업주관부서가 기간 내 개인정보보호 전담 조직, 정보보안 조직 등의 도움을 받아 별도의 영향평가팀을 구성하여 수행할 것을 권고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절차



[그림 2-11] 개인정보영향평가 절차

3. 시사점

- 관계 공무원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보다 쉽게 평가할 수 있는 현장 적용성이 높은 정책사업 관리 체크리스트 개발 필요
 - 대부분의 영향평가제도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되어 평가되어짐.
 - 따라서 시책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관계 공무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복지 시책의 평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간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과 사후 평가 모두 필요
 - 복지 시책이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른 부처간 협력 사업이 중요함.
 - 사업의 사전협의 절차를 통해 사업이 체계적으로 조정되어 추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후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끊임없이 모색되어야 함.
 - 따라서 복지사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업무 추진절차에서 사전과 사후 모두 평가가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영향평가제도 과정을 개선하여 정책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 방안 제안
 - 평가체계(목적, 대상, 기준, 결과 실효성)
 - 복지시책의 정책 전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영향평가의 목적, 대상, 결과 실효성에 대한 내용은 포함함.
 - 복지정책 평가의 작성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평가기준은 간이평가로 진행함.
 - 운영체계(절차, 시기, 수행 주체)
 - 평가절차는 간소화시켜 사업담당자와 예산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평가 시기는 사전과 사후 모두 병행할 수 있도록 구분함.
 - 평가수행 주체는 정책 담당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함.

제3장 서울시 복지정책 간이평가 체계

1. 개념
2. 목적 및 전체조건
3. 적용 대상 및 추진방법
4. 평가 지표
5. 평가시기별 체크리스트 양식



제3장 서울시 복지정책 간이평가 체계

1. 개념

■ 복지국가 목표(Asa Briggs, 2006)

- 개인과 가족에게 노동이나 재산의 시장가치에 관계없이 최저소득 보장 (자산보장)
- 개인과 가족이 실업, 질병, 장애, 고령화 등을 비롯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것으로써 개인의 선택이나 잘못뿐만 아니라 구조적 여건 등을 포함 (사회보장)
- 모든 시민이 지위와 계급에 관계없이 합의된 범위 내에서 국가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보편적 복지)

■ 서울시 복지정책 간이평가 개념

- 복지국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복지정책·사업 시행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임.**
 - 복지정책 및 사업 : 개인, 조직/단체, 인프라(건물) 전 영역에 포함된 정책 및 사업
 - 대상 집단과 표적 집단 : 대상 집단은 사업 대상자이며 표적 집단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집단 의미
 - 정책 과정 전반 : 기획·계획 단계 → 집행 단계 → 결과 단계

■ 서울시 복지정책 간이평가 역할

-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품질향상을 위해 각 정책단계별로 갖추어야 할 사안을 평가함.
- 복지수혜자의 욕구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부의 노력·활동을 평가함.

2. 목적 및 전제조건

■ 서울시 복지정책 간이평가 목적

-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한 개인/가족의 전 생애주기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개인/가족의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려함.
- 정책의 목적으로 기술된 사항에 대하여 실제로 정책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평가결과를 통해 복지시책으로서 가장 좋은 대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임.

■ 전제 조건(Australia, 2007¹⁵⁾: 한국행정연구원, 2010 재인용)

- 새로운 정책 또는 기존 정책 모두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함.
- 정책변화에 의해 수정할 문제 또는 설정할 방향은 시작단계부터 분명하게 하여 장·단기적으로 정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함.
- 초기단계부터 정책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조직과 관계 맺기가 되어야 함.
- 실행과정에서 장애물을 예측하고 정책의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실행가능성을 적용해야 함.

3. 적용 대상 및 추진방법

■ 적용 대상

-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산하 복지시책
 - 복지 시책의 범위는 복지국가의 목표에 부합하는 모든 영역이 포함될 수 있음.

15) '좋은 공공정책'이 가져야 할 조건을 재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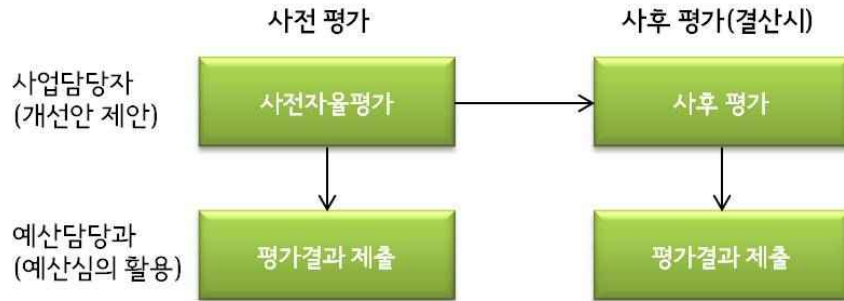
● 우선 선정기준

- 예산 규모가 크고 시민의 관심이 되는 사업
- 대상 범위가 넓고 파급효과가 큰 주요 복지시책 사업
-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신규 또는 변경되는 복지시책 사업
- 그 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추진 방법

● 사업별 추진 절차

- 사업담당자는 간이평가 사전/사후 결과를 통해 정책의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정책 전략 수립에 활용함.
- 예산담당과는 간이평가 사전/사후 결과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정책개선 에 환류 내용을 예산심의에 반영함.



[그림 3-1] 사전 및 사후 간이평가 절차도

- 매년 전체 사업에 대해 「총괄평가보고서」 또는 필요시 「심층평가보고서」 를 작성함.

4. 평가 지표

■ 지표설정 단계

- 정책기획, 집행, 결과 단계로 구분함.

■ 기획·계획 단계

- 법률검토, 관련자료·통계검토, 유관기관·사업 중복성 등 개입의 필요성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대안인가와 중복 지원 여부를 평가하고
- 도달할 정책목적의 수준을 측정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검토를 실시함.

<표 3-1> 기획·계획단계 검토사항

평가항목	목적	내용
법률 검토	- 정책을 기획할 때 관련 법률, 조례, 서울시장 방침 등 관련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제도적 근거가 있을 때 우수한 것으로 판단함. - 근거가 없는 경우 대안을 제시하거나 향후 근거를 마련함.
관련자료·통계검토	- 정책문제가 적절하게 규명되고 규명된 정책문제의 해소를 위한 정책수요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판단함.	- 근거가 되는 내용을 포함한 관련 자료 및 통계검토가 이루어지는가를 판단함. -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구축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함.
유관기관·사업 중복성	- 복지시책의 중복성과 누락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사업(예, 중앙부처, 서울시 자치구, 민간기관 등)을 조사하였는가를 파악함.	-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적절하게 모니터링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함.
사각지대 검토	- 정책목표가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가를 진단함. - 계획수립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가를 판단함.	- 직접적인 산출물로 목표가 설정되었는가를 점검함. - 사전조사를 통해 표적 집단의 사례 조사가 적절했는지를 파악함.

<표 3-2> 기획·계획단계 지표

평가항목	사전 평가지표	사후 평가지표
법률검토	근거 법률이 있는가?	근거 법률이 있는가?
	근거 조례가 있는가?	근거 조례가 있는가?
	서울시장 방침이 있는가?	서울시장 방침이 있는가?
관련자료·통계검토	국내·외 사례를 검토했는가?	
	사업 대상에 대한 통계자료를 검토했는가?	
	이 사업 대상에 대한 욕구조사가 이루어졌는가?	
유관기관·사업 중복성	중앙정부부처 및 관내 부처간 사업을 검토했는가?	
	서울시 자치구 사업과의 유사성을 검토했는가?	
	민간단체의 사업과의 유사성을 검토했는가?	
사각지대 검토	표적 집단에 대한 목표치(수치화)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표적 집단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했는가?
	표적 집단의 범위가 적절한가?	
	표적 집단의 선정 절차가 적절한가?	표적 집단 선정 절차 과정상의 문제는 없었는가?
	표적 집단에 대한 지원 수단(현물, 현금 등)이 적정한가?	표적 집단에 대한 지원 수단(현물, 현금 등)이 적정했는가?

■ 집행 단계

- 정책 및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달체계상의 인력 전문성, 관련 기관간의 협력관계, 홍보 등을 분석하는 단계임.

<표 3-3> 집행단계 검토사항

평가항목	목적	내용
지원인력 전문성	- 세부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진단함.	- 세부계획에 따른 집행에 있어 기관 및 부서차원에서 실행 가능성이 높은지를 파악함.
협력관계	- 계획을 집행할 때 관련 기관과의 역할과 사업간 업무 내용이 명료하게 제시되었는가를 판단함.	- 집행에서 활동의 내용과 방법이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파악함.
홍보	- 대외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통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정책 자체에 대한 홍보 활동과 정책 대상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인지를 판단함. - 홍보주체, 홍보방법, 홍보시기 등의 적절성을 판단함.

<표 3-4> 집행단계 지표

평가항목	사전 평가지표	사후 평가지표
지원인력 전문성	지원 인력의 규모가 적절한가?	지원 인력의 규모가 적절했는가?
	지원 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었는가?	지원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집행 과정상에 포함되었는가?
협력관계	관련 기관 및 정책과의 연계(협조 체계)가 구축되었는가?	관련 기관 및 정책과의 연계(협조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었는가?
	핵심 사업 이외에 부차적인 지원서비스를 위해 공공 및 민간 협력관계를 검토했는가?	핵심 사업 이외에 부차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를 위해 공공 및 민간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운영되었는가?

평가항목	사전 평가지표	사후 평가지표
홍보	대국민 홍보 계획이 있는가?	대국민 홍보가 제대로 수행되었는가?
	대상 집단에게 고지절차가 제대로 계획되었는가?	대상 집단에게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 결과 단계

- 사회적 영향을 제고한 필요한 부가적인 다른 정책 도입의 필요성 또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단계임.

<표 3-5> 결과단계 검토사항

평가항목	목적	내용
적합성	- 집행과정상 설정된 내용이 제대로 기능하는지를 판단함.	- 성과지표와 사업목적간의 연계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성과지표의 수행 정도를 파악함.
사회적 효과성	- 집행 결과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시켜 정책의 사회적 효과성을 추구하는지를 진단함.	- 구체적인 반영정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지를 판단함. -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복지향상 또는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파악함.
효율성	- 정책 및 사업 결과를 점검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설정되었는지를 판단함.	- 결과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규명하여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함. - 결과로부터 나타난 문제점을 익년도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과정상의 개선책을 확인함.
지속성	- 행정여건 및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함.	-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점검했는지를 파악함. - 예산 집행율을 통해 활동내역을 점검함.

<표 3-6> 결과단계 지표

평가항목	사전 평가지표	사후 평가지표
적합성	성과지표와 사업목적이 명확한 연계성이 있는가?	성과지표가 제대로 수행되었는가?
사회적 효과성	사업목표가 표적 집단의 복지 향상(소득, 일자리, 생활안정 등)에 기여하는가?	원래 의도했던 목표에 도달했는가?(만족도 조사 결과 등)
효율성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지원과정이 적절한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장애 요인에 대해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
지속성	해당 사업을 통해 배제된 대상은 없는가?	해당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복지 사각지대를 점검하였는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기 위한 모니터링 단계(대상집단 면접, 예산집행 검토 등)가 포함되었는가?	대상 집단 중심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는가?
		예산 집행율은 걱정했는가?

5. 평가시기별 체크리스트 양식

■ 수행되는 시점에 따라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구분

● <표 3-7>은 평가 상황에서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의 차이를 제시함.

<표 3-7> 평가 상황에서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의 차이

평가항목	사전평가	사후평가
평가시점	- 서울시 복지정책 계획이전 기획단계에서 사업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에 대한 점검체계임.	- 서울시 복지정책이 집행된 이후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임.
평가목적	- 정책의 목적으로 제안한 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정책이 달성가능한지에 대해 파악함.	- 정책의 목적으로 제안된 내용에 대해 정책이 달성되었는가를 파악함.
기대효과	- 정책의 모든 프로세스를 점검함으로써 합리적 정책수행 및 정책책임제를 실현할 수 있음. - 사전평가 결과보고서는 예산심의 때 의사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정책의 모든 프로세스를 평가함으로써 문제점 발견 및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함.

1) 사전 평가

■ 서울시 복지정책 간이평가의 사전평가에 대한 정책 단계별 확인 사항은 아래와 같음.

<표 3-8> 서울시 복지정책 간이평가 사전 체크리스트 양식

단계	평가항목	사전 평가지표	예	아니오	근거
기획 · 계획	법률검토	근거 법률이 있는가?			
		근거 조례가 있는가?			
		서울시장 방침이 있는가?			

단계	평가항목	사전 평가지표	예	아니오	근거	
	관련자료·통계검토	국내·외 사례를 검토했는가?				
		사업 대상에 대한 통계자료를 검토했는가?				
		이 사업 대상에 대한 욕구조사가 이루어졌는가?				
	유관기관·사업 중복성	중앙정부부처 및 관내 부처간 사업을 검토했는가?				
		서울시 자치구 사업과의 유사성을 검토했는가?				
		민간단체의 사업과의 유사성을 검토했는가?				
	사각지대 검토	표적 집단에 대한 목표치(수치화)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표적 집단의 범위가 적절한가?				
		표적 집단의 선정 절차가 적절한가?				
		표적 집단에 대한 지원 수단(현물, 현금 등)이 적절한가?				
	집행	지원인력 전문성	지원 인력의 규모가 적절한가?			
			지원 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었는가?			
협력관계		관련 기관 및 정책과의 연계(협조 체계)가 구축되었는가?				
		핵심 사업 이외에 부차적인 지원서비스를 위해 공공 및 민간 협력관계를 검토했는가?				
홍보		대국민 홍보 계획이 있는가?				
		대상 집단에게 고지절차가 제대로 계획되었는가?				
결과	적합성	성과지표와 사업목적이 명확한 연계성이 있는가?				
	사회적 효과성	사업목표가 표적 집단의 복지 향상(소득, 일자리, 생활안정 등)에 기여하는가?				
	효율성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지원과정이 적절한가?				
	지속성	해당 사업을 통해 배제된 대상은 없는가?				

단계	평가항목	사전 평가지표	예	아니오	근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기 위한 모니터링 단계(대상집단 면접, 예산집행 검토 등)가 포함되었는가?			

2) 사후 평가

■ 서울시 복지정책 간이평가의 사후평가에 대한 정책 단계별 확인 사항은 아래와 같음.

<표 3-9> 서울시 복지정책 간이평가 사후 체크리스트 양식

단계	평가항목	사후 평가지표	예	아니오	근거
기획 · 계획	법률검토	근거 법률이 있는가?			
		근거 조례가 있는가?			
		서울시장 방침이 있는가?			
	사각지대 검토	표적 집단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했는가?			
		표적 집단 선정 절차 과정상의 문제는 없었는가?			
		표적 집단에 대한 지원 수단(현물, 현금 등)이 적정했는가?			
집행	지원인력 전문성	지원 인력의 규모가 적절했는가?			
		지원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집행 과정상에 포함되었는가?			
	협력관계	관련 기관 및 정책과의 연계(협조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었는가?			
		핵심 사업 이외에 부차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를 위해 공공 및 민간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운영되었는가?			

단계	평가항목	사후 평가지표	예	아니오	근거
	홍보	대국민 홍보가 제대로 수행되었는가?			
		대상 집단에게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결과	적합성	성과지표가 제대로 수행되었는가?			
	사회적 효과성	원래 의도했던 목표에 도달했는가?(만족도 조사 결과 등)			
	효율성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가?			
		장애 요인에 대해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			
	지속성	해당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복지 사각지대를 점검하였는가?			
		대상 집단 중심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는가?			
예산 집행율은 적정했는가?					

제4장 평가결과 활용 및 향후 추진방향

1. 평가결과 활용방안
2. 향후 추진방향



제4장 평가결과 활용 및 향후 추진방향

1. 평가결과 활용방안

■ 정책 품질 개선 효과

- 정책 수혜자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복지행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됨.
- 사전 및 사후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 통계지표 및 정책 활용을 위한 정보로 사용함.
- 정책 및 사업의 집행 및 평가에 필요한 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도입 또는 변경의 내용을 구체화시킬 수 있음.
- 사업담당자에게 자율적으로 평가업무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선안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책개선 실행에 이바지함.

■ 부처간, 민관간의 역할 정립

- 평가기준에 따라 정책 기획 및 집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해당 기관과의 협력 등이 강화됨.
- 부처간 또는 지역 사회내의 민관협력의 증추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다양한 영역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을 포괄할 수 있어 사업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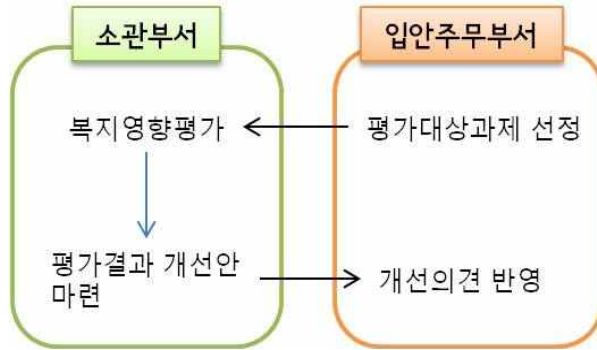
■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과 정책결정자에게 정보 제공

- 정책 및 사업 시행으로 인해 나타날 욕구충족 정도 및 파급효과 등을 분석·예측하여 복지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

2. 향후 추진방향

■ 서울시 복지정책 간이평가 체계 수립 계획

- 2011년 서울시 복지정책(복지분야) 간이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 2012년 서울시 복지정책 분야별 체크리스트 개발
 - 돌봄, 주거, 교육, 건강



[그림 4-1] 서울시 복지정책 간이평가를 위한 부서별 역할 체계도

■ 서울시 복지정책 간이평가 단계별 검토 일정

- 1단계 : 시장방침 수립
 - 서울시 복지정책 간이평가 체계에 대한 효과성과 합리성을 검토한 후 지표를 보완함.
- 2단계 : 시범실시 단계(사업 담당자)
 - 사전 : 사업담당자(사전자율평가) → 예산담당과실 제출(예산심의에 활용)
 - 사후 : 결산 → 사업담당자(사후 평가) → 예산담당과실 제출

- 3단계 : 심층평가 또는 총괄평가(위탁 의뢰)
 - 필요시 심층평가를 실시함.
 - 연차별로 사전자율평가와 사후평가를 취합해서 연말 총괄평가를 작성함.
- 4단계 : 조례 및 법령 근거 수립
 - 복지수혜자에게 양질의 정책을 양산하여 실질적으로 복지시책의 개선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참 고 문 헌

- 강성호(2011),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추정과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노후빈곤완화 효과”, 「재정학연구」, 4(2), pp.89-121.
- 고용노동부(2011), 「일을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 고용영향평가와 함께 만들어 갑니다」.
- 국무총리실 보도자료(2011), “정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4년까지 7,000명 확충 추진”.
- 국무총리실(2008),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09), 「건강보험 체납자 관리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2011), 「2012년 부패영향평가지침」.
- 국회예산정책처(2009),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쟁점분석」.
- 노화준(2003), 「정책평가론」, 서울:법문사.
- 서울특별시교육청(2011), 「교육환경평가제도·학습환경보호제도」.
- 여성가족부(2010),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2011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 유지연·한민규·임현·안병민·황기하(2010), “한국의 기술영향평가, 현황과 과제”, 「기술 혁신학회지」, 13(4), pp.617-816.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최종보고 워크숍)」.
- 한국행정연구원(2010), 「기관 핵심정책의 진단분석과 정책개선방안 연구」.
-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1),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2009), 「환경영향평가서 내 위생공중보건 항목 작성을 위한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http://www.keis.or.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홈페이지(<http://www.eiass.go.kr>)
- Briggs, A.(2006), “The Welfare State in Historical Perspective”, Pierson, C. & Castles, F. G. (2006), 「The Welfare State Reader」, Polity Press.

서울시복지재단 2011-연구-8

복지영향평가 지표개발 및 예비조사

- 간이평가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

발행일 : 2011년 12월

발행처 : 서울시복지재단

발행인 : 이 정 관

편집인 : 김 남 식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52(신문로2가 1-43)

전 화 : 02-2011-0400

팩 스 : 02-2011-0500

www.welfare.seoul.kr/evaluation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